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3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9일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9조의9제1항 신설),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점검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의9제2항 신설), ③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37조의2제1호의2 신설), ④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9조제1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9(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유출지하수의 기준, 발생현황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현행	개정안
	<u>부령으로 정한다.</u>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 ② <u>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u>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2(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1의2.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제39조(과태료) ----- -----

현행	개정안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 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현 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자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는 연 평균 약 173건으로, 매년 약 100~300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연 평균
284	142	177	162	102	867	173.4

주 : 지반침하사고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394건), 다짐(되메우기) 불량(156건), 굴착공사 부실(85건) 등임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이 특별점검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므로¹⁾,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지하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 「지하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⑤ (생략)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반침하하는 지하매설물 손상, 굴착공사 부실, 집중호우, 연약지반, 지하수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유출지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지반침하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수량 기준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 시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하수법」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 규제로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중 신고·지휘체계로 인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48